

전기밥솥 관리 개선(안)

2025. 2. 6 (목)

■ 현재 / 문제점

- 생활관에서의 취사 행위는 엄격히 금지 (사생수칙 21항)
- 예외적으로 화홍관, 국제학사 외국인 사생은 전기밥솥을 보관 및 사용할 수 있음 (신고제)
- 한국 전기용품 안전인증(KC)이 없는 전기 밥솥이 무분별 하게 사용되고 있어,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상존 (전기 사양이 다른 외국산 전기밥솥 사용)
- 고전력 대형 전기밥솥(10인용 이상)을 사용하고 있어 전기 과부하 문제 발생

		
외국산 제품	냄비형 제품	에어프라이어

■ 개선(안)

1. 전기밥솥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 : 관리번호를 통한 관리
2.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했을 때 등록 허가 후, 관리번호 부여 및 승인 스티커 부착
 - 대한민국 전기안전 용품 인증(KC)을 받은 제품일 것
 - 용량 : 3~4인용 이하의 제품일 것
 - 밥솥 (밥 짓기 전용) 제품일 것 (에어프라이어, 냄비형 쿠키 제품 불가)
 - 연결된 전기선이 파손/훼손되지 않은 제품일 것



		
<p>등록가능</p>	<p>(냄비형 제품) 등록불가</p>	<p>(에어프라이어) 등록불가</p>

3. 전기밥솥 등록요청 가능 대상 : 화흥관, 국제학사 거주 외국인 사생
 - 화흥관/국제학사 제외 모든 생활관에서 밥솥 사용 금지
4. 등록된 전기밥솥에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 및 관리대장 기입
5. 등록 갱신 주기 : 6개월 (1학기+하계 / 2학기+동계)
6. 수시 점검 및 호실 점검을 통해 미등록 전기밥솥 및 등록불가 제품은 반출 또는 폐기 처리
7. 적용일 : 2025년 2월 22일부터.끝.